

대기배출업소 관리요령

(관련법령 : 대기환경보전법)

■ 설치 허가를 받은 사업자

● 변경허가를 받아야 하는 경우[변경 전 신고](시행령 제11조제4항)

1. 배출시설 규모의 증설 (배출시설 규모의 합계나 누계는 배출구별로 산정)
 - 허가 또는 신고한 배출시설 규모의 합계나 누계의 100분의 50 이상 증설 시
 - 특정대기유해물질 배출시설은 100분의 30 이상 증설 시
2. 설치허가를 받은 배출시설의 용도 추가

☞ 미이행시 법 제89조(벌칙)제1호,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

● 변경신고를 하여야 하는 경우(시행규칙 제27조제1항)

1. 배출시설을 증설 또는 교체하거나 폐쇄하는 경우. 다만, 배출시설의 규모를 10 퍼센트 미만으로 증설 또는 교체하거나 폐쇄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모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변경전 신고)
 - 가. 배출시설의 증설·교체·폐쇄에 따라 변경되는 대기오염물질의 양이 방지시설의 처리용량 범위 내일 것
 - 나. 배출시설의 증설·교체로 인하여 다른 법령에 따른 설치 제한을 받는 경우가 아닐 것
2. 배출시설에서 허가받은 오염물질 외의 새로운 대기오염물질이 배출되는 경우 (30일 이내 신고)
3. 방지시설을 증설·교체하거나 폐쇄하는 경우(변경전 신고)
4. 사업장의 명칭이나 대표자를 변경하는 경우(2개월 이내 신고)
5. 사용하는 원료나 연료를 변경하는 경우. 다만, 새로운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하지 아니하고 배출량이 증가되지 아니하는 원료로 변경하는 경우 또는 종전의 연료보다 황함유량이 낮은 연료로 변경하는 경우는 제외한다.(변경전 신고)
6. 배출시설 또는 방지시설을 임대하는 경우(30일 이내 신고)
7. 그 밖의 경우로서 배출시설 설치허가증에 적힌 허가사항 및 일일조업 시간을 변경하는 경우 (변경전 신고)

☞ 미이행시 법 제94조(과태료)제4항제1의2,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 설치 신고를 한 사업자(시행규칙 제27조제3항)

● 변경신고를 하여야 하는 경우

1. 배출시설을 증설 또는 교체하거나 폐쇄하는 경우. 다만, 배출시설의 규모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한 배출시설과 같은 종류의 배출시설로서 같은 배출구에 연결되어있는 배출시설(방지시설의 설치를 면제받은 배출시설의 경우에는 면제받은 배출시설)의 총 규모를 말한다]를 10퍼센트 미만으로 증설 또는 교체하거나 폐쇄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모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변경전 신고)
 - 가. 배출시설의 증설·교체·폐쇄에 따라 변경되는 대기오염물질의 양이 방지시설의 처리용량 범위 내일 것
 - 나. 배출시설의 증설·교체로 인하여 다른 법령에 따른 설치 제한을 받는 경우가 아닐 것
2. 배출시설에서 신고한 대기오염물질 외의 새로운 대기오염물질이 배출되는 경우(30일 이내 신고)
3. 방지시설을 증설 · 교체하거나 폐쇄하는 경우(변경전 신고)
4. 사용하는 원료나 연료를 변경하는 경우. 다만, 새로운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하지 아니하고 배출량이 증가되지 아니하는 원료로 변경하는 경우 또는 종전의 연료보다 황함유량이 낮은 연료로 변경하는 경우는 제외한다.(변경전 신고)
5. 사업장의 명칭이나 대표자를 변경하는 경우(2개월 이내 신고)
6. 배출시설 또는 방지시설을 임대하는 경우(30일 이내 신고)
7. 그 밖의 경우로서 배출시설 설치신고 증명서에 적힌 신고사항 및 일일조업시간을 변경하는 경우(변경전 신고)

☞ 미 이행시 법 제94조(과태료)제4항제1의2,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 배출시설 등의 가동개시 신고(법 제30조제1항)

1. 배출시설의 변경을 완료하여 당해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을 가동하고자 하는 때 [설치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배출구별 배출시설규모의 합계보다 100분의 20이상 증설 시(대기배출시설 증설에 따른 변경신고의 경우에는 증설의 누계를 말한다)]
2. 배출시설 또는 방지시설의 설치를 완료하여 당해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을 가동하고자 하는 때

☞ 미 이행시 법 제91조(벌칙)제1호,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대기배출·방지시설을 운영하는 사업자의 금지행위(법 제31조제1항)

1. 배출시설을 가동할 때에 방지시설을 가동하지 아니하거나 오염도를 낮추기 위하여 배출시설에서 나오는 오염물질에 공기를 섞어 배출하는 행위
2. 방지시설을 거치지 아니하고 오염물질을 배출할 수 있는 공기 조절장치나 가지 배출관 등을 설치하는 행위.
3. 부식이나 마모로 인하여 오염물질이 새나가는 배출시설이나 방지시설을 정당한 사유 없이 방치하는 행위
4. 방지시설에 딸린 기계와 기구류의 고장이나 훼손을 정당한 사유 없이 방치하는 행위
5. 그 밖에 배출시설이나 방지시설을 정당한 사유 없이 정상적으로 가동하지 아니하여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행위

- ☞ 미 이행시(1,5호) 법 제89조(벌칙)제3호,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
- ☞ 미 이행시(2호) 법 제90조(벌칙)제2호,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
- ☞ 미 이행시(3,4호) 법 제94조(과태료)제3항제1호,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

■ 대기오염방지시설에 적산전력계 부착(시행령 제17조제4항〔별표 2〕)

1. 적산전력계의 부착대상 시설

배출시설에 법 제26조에 따라 설치하는 방지시설. 다만, 다음의 방지시설은 제외한다.

- 가. 굴뚝 자동측정기기를 부착한 배출구와 연결된 방지시설
- 나. 방지시설과 배출시설이 같은 전원설비를 사용하는 등 적산전력계를 부착하지 아니 하여도 가동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방지시설
- 다. 원료나 제품을 회수하는 기능을 하여 항상 가동하여야 하는 방지시설

2. 적산전력계의 부착방법

가. 적산전력계는 방지시설을 운영하는 데에 드는 모든 전력을 적산할 수 있도록 부착하여야 한다. 다만, 방지시설에 부대되는 기계나 기구류의 경우에는 사용되는 전압이나 전력의 인출지점이 달라 모든 부대시설에 적산전력계를 부착하기 곤란한 때에는 주요 부대시설(송풍기와 펌프를 말한다)에만 적산전력계를 부착할 수 있다.

나. 방지시설 외의 시설에서 사용하는 전력은 적산되지 아니하도록 별도로 구분하여 부착하되, 배출시설의 전력사용량이 방지시설의 전력사용량의 2배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별도로 구분하지 아니하고 부착할 수 있다

- ☞ 미 이행시 법 제90조(벌칙)제3호,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

■ 측정기기 사업자의 금지행위(법 제32조제3항)

1. 배출시설이 가동될 때에 측정기기를 고의로 작동하지 아니하거나 정상적인 측정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도록 하는 행위
2. 부식, 마모, 고장 또는 훼손되어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아니하는 측정기기를 정당한 사유 없이 방치하는 행위(제1항 본문에 따라 설치한 측정기기로 한정한다)
3. 측정기기를 고의로 훼손하는 행위
4. 측정기기를 조작하여 측정결과를 빠뜨리거나 거짓으로 측정결과를 작성하는 행위

☞ 미 이행시 법 제90조(벌칙)제4호,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

■ 대기배출시설·방지시설의 운영기록부 작성 및 보존(시행규칙 제36조제2항)

1. 사업자는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운영기간 중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운영 기록부에 매일 기록하고 최종 기재한 날부터 1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2. 운영기록부는 테이프·디스켓 등 전산에 의한 방법으로 기록·보존할 수 있다.

☞ 미 이행시 법 제94조(과태료)제2항제1호,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 환경기술인 임명, 교육(법 제40조제1항, 시행규칙 제125조제1항)

1. 환경기술인 임명 및 준수사항

- 가. 사업자는 배출시설과 방지시설의 정상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환경기술인을 임명하여야 한다.
- 나. 환경기술인은 그 배출시설과 방지시설에 종사하는 자가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지 아니하도록 지도·감독하고,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운영결과를 기록·보관하여야 하며, 사업장에 상근하는 등 준수사항을 지켜야 한다.
- 다. 사업자는 환경기술인이 준수사항을 철저히 지키도록 감독하여야 한다.
- 라. 사업자 및 배출시설과 방지시설에 종사하는 자는 배출시설과 방지시설의 정상적인 운영·관리를 위한 환경기술인의 업무를 방해하여서는 아니 되며, 그로부터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요청을 받은 경우에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 미 이행시 법 제94조(과태료)제2항제2호,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2. 환경기술인 교육

- 가. 신규교육: 환경기술인으로 임명된 날부터 1년 이내에 1회
- 나. 보수교육: 신규교육을 받은 날을 기준으로 3년마다 1회

☞ 미 이행시 법 제94조(과태료)제4항제8호,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 자가측정 대상·항목 및 방법(시행규칙 제52조제3항)

● 관제센터로 측정결과를 자동전송하지 않는 사업장의 배출구

구 분	배출구별 규모	측정횟수	측정항목
제1종 배출구	먼지·황산화물 및 질소산화물의연간 발생량 합계가 80톤 이상인 배출구	매주 1회 이상	배출허용기준이 적용되는 대기오염물질. (다만, 비산먼지는 제외한다.)
제2종 배출구	먼지·황산화물 및 질소산화물의연간 발생량 합계가 20톤 이상 80톤 미만인 배출구	매월 2회 이상	
제3종 배출구	먼지·황산화물 및 질소산화물의연간 발생량 합계가 10톤 이상 20톤 미만인 배출구	2개월마다 1회 이상	
제4종 배출구	먼지·황산화물 및 질소산화물의연간 발생량 합계가 2톤 이상 10톤 미만인 배출구	반기마다 1회 이상	
제5종 배출구	먼지·황산화물 및 질소산화물의연간 발생량 합계가 2톤 미만인 배출구	반기마다 1회이상	

▶ 비고

- 제3종부터 제5종까지의 배출구에서 별표 8의2(설치허가 대상 특정대기유해물질 배출시설의 적용기준)에 따른 **기준 이상의 특정대기유해물질 배출되는 경우에는 매월 2회 이상 해당 오염물질에 대하여 자가측정**을 하여야 한다.
- 방지시설설치면제사업장은 해당 시설에 대한 자가측정을 생략할 수 있다.
- 굴뚝 자동측정기기를 설치한 배출구에 대한 자가측정은 자동측정되는 해당 항목에 한정하여 자가측정을 한 것으로 본다.
- 굴뚝 자동측정기기를 설치한 배추굴에서 굴뚝 자동측정기기의 고장 등으로 배출구별 규모에 따른 측정횟수를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2개월마다 1회 이상 자가 측정을 하여야 한다.
- 대기오염물질 중 먼지만 배출되는 시설로서 여과집진시설을 설치한 배출시설은 시설의 규모에 관계없이 반기마다 1회 이상, 여과집진시설 외의 방지시설을 설치한 사업장 중 월 2회 이상 측정하여야 하는 배출시설은 2개월마다 1회 이상 측정할 수 있다.
- 해당 연도 이전 **최근 1년간** 오염도 검사결과 대기오염물질이 계속하여 배출 허용 기준의 **30퍼센트 이내인 경우에는 제1종배출구는 매월 2회 이상, 제2종 배출구는 매월 1회 이상, 제3종배출구는 분기마다 1회 이상, 제4종 및 제5종 배출구는 매년 1회 이상 측정할 수 있다.** 다만, 별표 8의2에 따른 기준 이상의 특정대기유해물질을 배출하는 경우에는 해당 오염물질에 대하여 제1종배출구는 매월 2회 이상, 제2종부터 제5종까지의 배출구는 매월 1회 이상 측정하여야 한다.

☞ 미 이행시 법 제90조(벌칙)제4의3,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